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再活用) 촉진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선·보완, 5월 28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6월 4일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부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껌’에 대한 소비량 감소 및 배출문화의 정착이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 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9) 삭제 <2021. 5. 25.>
 - 바. 삭제 <2022. 6. 7.>
- [전문개정 2009. 4. 6.]

위임행정규칙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 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2. 부동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 3. 삭제 <2024. 6. 4.>
-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삭제 <2021. 5. 25.>

바. 삭제 <2022. 6. 7.>

[전문개정 2009. 4. 6.]

[시행일: 2024. 7. 1.] 제10조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2023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

위임행정규칙

-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

[시행일: 2024. 7. 1.] 제12조

별표 2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사)한국포장협회 서적 안내



신·식품포장용 필름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가격 : 20,000원



(사)한국포장협회 30년사

(사)한국포장협회 30년의 역사와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발행된 한국포장협회 30년사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포장산업의 역사와 발자취를 조망한 한편의 책이다. 책은 발간사와 기념사 및 축사에 이어 크게 현황, 연혁화보, 통사, 부록으로 나뉘어 있다.

· 가격 : 50,000원